

■ 최신 판례 ■

[제약 · 바이오 · 의료]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'관계 서류'의 범위

신민 변호사 | 서준희 변호사

1. 사실관계

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국민건강보험법') 제84조 제2항에 따라 甲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명하였으나, 甲 요양기관은 전산기록의 형태로 보관 중인 자료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출을 거부하였음.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甲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데, 甲 요양기관은 법원에 요양기관업무정지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.

2. 쟁점

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'서류'에 전자기록이 포함되는지 여부

3. 판시사항

(1) 구 의료법(2011. 8. 4.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음)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·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, (2)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2012. 8. 31.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 제1항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

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, (3) 위와 같은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(2013. 6. 12.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,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.

뿐만 아니라, (4)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위 조항의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(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) 위 조항의 관계 서류에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, (5)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4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자료에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아울러 보더라도,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'서류'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.

4. 해설

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¹은 '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(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함)에 대하여 요양·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'고 규정하고 있었는데,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(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호), 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(같은 법 제95조).

¹ 참고로 일부 문구만 수정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이자 범죄의 구성요건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, 그 적용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'서류'에 전자기록도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.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회적 변화 및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,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근거하여 전자기록도 위 규정이 정하는 서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.

5. 다운로드 : [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28438 판결](#)